

「新경제」 100日計劃

이 자료는 11개 경제부처와 신경제계획위원회에서 3월 22일 발표한 「新경제」 100일계획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新경제」의 기본구상

1) 「新경제」의 발전 원동력

-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지시·통제에 의해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 시킴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룩
-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 각계층의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
- 90년부터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물가반등도 아직 불안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치는 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장래가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발전의 원동력이 정부의 지시·통제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 발휘로 대체되어야 함.
- 국민의 참여와 창의력을 유발하기 위하여는 행정·금융·재정분야의 제도개혁이 필요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의식도 민주주의체제에 맞게 새로워져야 함.
- 「新경제」 건설을 위하여 「新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최초 100일간에는 「新경제 100일계획」을 추진

2) 「新경제 5개년계획」의 개요

(1) 목적

- 「新경제」의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 「新경제」의 개혁과제를 치밀한 전략하에서 일관성있게 추진

(2) 연도별 중점 추진전략

처음 100일

- 경기활성화에 주력
- 행정규제완화 중심의 제도개혁
- 공직자 등의 의식개혁운동

'93년 하반기

- 국내부문 제도개혁의 착수
- 대외부문 제도개혁 기반 조성
- 시민의식 개혁 착수

'94년

- 국내부문 제도개혁 마무리
- 대외부문 제도개혁 본격화

'95~'96년

- 대외부문 제도개혁 마무리
- 제도개혁의 미비점 보완
- 생활경제 문제해결 노력 본격화

'97년

- 「新경제」목표 달성

3) 「新경제 100일계획」의 목적

- 「新경제 5개년계획」의 첫걸음으로서 「新경제 100일계획」을 수립·추진함.
- 「新경제 100일계획」의 목표는 「新경제」건설의 성패가 첫 100일간에 결정된다는 인식 아래
 - 국민들의 새정부에 대한 기대를 새정부의 경제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로 바꾸고
 - 현재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움직이는 분위기로 일신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임.
 - 제도개혁은 경기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행정규제완화부터 본격 추진
- 이를 위하여 앞으로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은
 - 첫째, 투자신진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추진
 - 둘째, 중소기업에 내실있게 육성
 - 셋째,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넷째, 경제행정규제 등 기업애로 요인을 제거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
 - 다섯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 여섯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필품가격을 철저히 관리
 - 일곱째,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공직자를 중심으로 착수하여 제도개혁의 실효성을 뒷받침

2. 「新경제 100일계획」의 중점과제와 시책

1) 경기의 활성화

◇ 基本方向 ◇

- ◇ 침체된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제도 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추진
- ◇ 경기회복을 위하여 재정·금융상의 수요진작 시책을 활용하되,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음.

(1) 금리의 하향안정

- 시장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하여 3월중 공금리를 추가 인하

(2) 금융의 완화

① 통화의 신축적 관리

- 기업의 투자자원 조달상의 애로를 완화하고 시장실세금리가 하락될 수 있도록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

② 설비자금의 공급 확대

- 현행 1조원 규모의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모든 은행에서 취급토록 하는 등 융자방식을 개선

- 국산기계구입자금 등 설비자금공급을 연초 계획보다 5,700억원이 추가된 9조 7,400억원 규모로 확대

③ 외화자금 활용

- 기업의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延支給 허용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하여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

④ 직접금융 원활화

- 제조업체에 대한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제한을 완화하여 설비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

⑤ 무역금융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1달 러당 65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

- 최근 플랜트 수출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금년도 수출입은행의 延拂輸出 지원규모를 2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증액

(3) 조세 및 재정정책

① 세제상 조치

- 투자액의 7~1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93년 6월에서 '93년 12월까지 연장

- 간이 關稅還給 대상기업을 연간 환급실적 2

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② 재정지출의 조기 집행

- 중앙정부와 투자기관의 공공사업비 예산을 상반기중에 약 60% 수준까지 앞당겨 지출함으로써 작년 상반기보다 약 6조원의 수요 진작 효과가 있도록함.

2)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基本方向◇

- ◇ 경기활성화의 효과가 중소기업 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추진
- ◇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원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재정비

(1)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정부재정의 질감분을 포함하여 약1조원 규모에 상당하는 공공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관련 제품구매와 자동화·합리화·기술개발 등 구조조정 사업에 투입
-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튼튼한 계열·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중점 지원

(2) 금융규제 개선을 통한 자금난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금지업종의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담보취득 허용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
- 향후 6개월간 중소제조업체가 할인 의뢰하는 모든 어음의 재할인 기간(대기업 발행어음 포함)을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
-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평점에 관계없이 전액 허용하고,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회사채 지급보증 규모를 확대

- 현행 유망중소기업 설비자금(2,500억원)이 조만간 소진될 전망이므로 2,500억원을 추가 지원

- 상반기중 10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자금이 중소기업체에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특별창구 개설 운용

(3)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 23개 정부투자기관의 '93년 중소기업 물자구매 예산의 65%(1조원 규모)를 상반기중 조기 집행
- 무역진흥공사에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 국내 및 주요 해외시장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설치(무역협회·무역진흥공사가 지원)

(4) 중소기업의 지원제도 정비

- 복잡다기한 현행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통폐합
-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기금도 현재 업종별·지역별·사업별로 분산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구조조정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편
- 세제지원제도도 알기 쉽게 개선하고 7개 지방국세청에 서류작성 등을 대행해 주는 '조세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 출연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중소기업의 사무자동화와 생산자동화를 지원하는 '정보화사업단' 설치
- 정부구매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5)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체제 마련

- 신용보증기관의 각 지방점포에서는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거래희망 기업에 대한 정보를

-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구축
- (6)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설치
 - 부총리 또는 상공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금융기관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여하여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
 - 이상의 모든 육성시책과 제도개선 사항이 실제로 현장에 침투되고 있는지를 점검

3) 기술개발의 촉진

◇基本方向◇

- ◇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가 산업현장의 생산기술 향상으로 연결되므로 종래의 기술개발 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고
- ◇ 선진기술의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 ◇ 국내 연구기관의 역할도 재정립

- (1)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발전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성장 유망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 (2) 선진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224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개방예시 계획을 상반기중 마련 추진
 -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과 해외차입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
- (3) 연구개발체계의 개선
 - 정부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방식을 현행 '연구소별 지원 방식'에서 연구팀에 대한 과제별 '연구계약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기술애로가 심각한 중소기업분야의 현장에 투입하여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

○이를 통하여 정부출연연구소 보유기술의 기업화도 촉진

4)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基本方向◇

- ◇ 복잡다기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위축되어 왔던 기업의욕을 되살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
- ◇ 7개 경제단체 등 민간 건의사항 및 부처 자체발굴사항 등 총 1,079개 과제를 검토하여 이 중 670개 과제를 금번에 개선 대상으로 확정
- ◇ 시행령, 규칙, 고시개정 등은 상반기중 모두 조치 완료하고 국회심의회가 필요한 법률의 개정 혹은 제정도 年内 마무리

(1) 각종 認·許可 등 진입규제의 완화

- 현행 인·허가 대상을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대폭 전환
 - 무역업, 자동차 정비업, 항만운송업, 해외건설업, 양곡매매·도정·제분업, 장의자동차업, 소규모 음식점 등
- 공급구역, 사업영역 제한의 철폐 또는 완화
 - 일반구역 운송사업, 용달업, 해운선사업, 탁·약주공급, 연탄공급 등
- 면허제·등록제 또는 신고제의 폐지
 - 항공관련업, 사료판매업, 해운업체 국외지점 설치허가, 세탁업 등

(2) 공장입지 기준 완화 및 설립절차 간소화

- 수도권 제한정비지역내의 첨단업종 공장증설(3천m²까지)을 손쉽게 하고,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가격도 완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업종 지정 기준을 합리화
- 수도권내 소규모 공단의 지정절차 간소화
- 기존공장의 증설시 1천평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
- 기준공장 면적을 하향조정으로 첨단업종 등

- 의 부지난 완화
- 수개 棟으로 구성된 공장 건축시 동별로도 준공을 허가
- (3) 의무고용부담 완화, 직업훈련 및 노무관리제도 개선
 - 산업안전·보건, 환경, 에너지 관리분야 등의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축소하고 유사 직종간 겸임허용도 확대
 - 직업훈련비용의 용도별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위탁훈련의 지역제한을 철폐하며, 직업훈련경비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 근로감독을 이유로 한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사용자에 대한 각종 보고·출석의무 대폭 축소
- (4) 수출입 절차 간소화
 - 동일물품의 반복수출시 1회의 수출승인만으로 일정기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1만달러 이하 소액 수출은 승인절차를 면제
 - 수출품질검사 지정품목, 생사류 및 수산물에 대한 사전 의무검사제 폐지
- (5) 금융, 증권, 외환 관련 규제의 완화
 -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 중소기업 소액대출(1억원 이하)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확대
 -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물량 제한 폐지
 - 중개어음 발행 최저금액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수출선수금 領收企業 범위를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기업에서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
 -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 상품권 발행 허용 추진
 - 1백만달러 이하 해외투자 신고시 사업타당성 등·심사 생략
 - 송금한도 확대 등 해외지사 영업활동 규제 완화
 -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축소
- (6) 조세 및 관세 납부절차 개선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 조정
- 영세업자의 월별 소득세 납부를 분기별 납부제로 개선
- 관세납부 담보물에 자기발행 약속어음도 허용
- 수출물품의 보세장치 의무제를 폐지하고, 제조장소에서 통관절차 허용
- 수출품 확인 검사비용 축소(현행 8.7% → 5%이하)
-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통로 지정제도 폐지
- (7)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완화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의 시장·군수 전용허가 범위확대
 - 신규 영농 참여자에 대해 농지 취득전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의 예외 인정
 - 도시계획구역내 농지거래의 경우 농지매매 증명 생략
 - * 토지이용,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 등 관련사항은 상반기중 종합개선방안 별도 마련
- (8) 환경관련 규제의 합리화
 - 제반 환경기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련된 절차 및 보고 간소화
 - 유해성이 적은 산업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준 완화

5)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체계개편

◇基本方向◇

◇ 농어촌 구조개선사업(92~2001년간 42조 원 투자)의 추진체계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농업구조가 개편되도록 유도

- (1) 투자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되, 사업내용은 농어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체계를 마련

- (2)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기반투자를 지원해 나갈.
- (3) 기술농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농업기술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産·官·學·研의 협동연구개발 및 효율적 기술보급체제 구축
- (4) 생산자단체와 농수산 지원조직을 「新경제」추진 방향에 맞도록 정비·보강

6) 기본생활품 가격의 안정

◇基本方向◇

- ◇ 전반적으로 물가안정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면서
- ◇ 특히 생활물가와 주택가격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 나갈

- (1)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수의 기본 생활품에 대하여는 정부가 가격을 특별관리
 -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요금을 금년말까지 동결
 -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관리

(2) 주택가격의 안정 지속

- 주택가격이 계속 안정될 수 있도록 투기조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실시
- 제도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동산 과표현실화 방안과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

7) 공직자 의식개혁

◇基本方向◇

- ◇ 「新경제」건설을 위한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력을 유발시

키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의식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함.

- ◇ 전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100일계획」기간중에는 우선적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1)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새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정치의 이념에 상응하는 「新경제」의 운영원칙을 생활화하는 데 중점

- 「민주주의 정치」에 상응하는 「자율성」의 원칙, 즉 정책결정과정의 분권화에 대한 교육

- 「예측가능한 정치」에 상응하는 「일관성」의 원칙,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 않고 부처간에 서로 상충되지 않는 정책수립에 대한 교육

- 「깨끗한 정치」에 상응하는 「투명성」의 원칙, 즉 정책결정과정의 공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한 교육

- 경제행정은 국민에 대한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봉사」라는 정신교육

(2) 공직자 이외의 대상계층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은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3. 「新경제」건설을 위한 고통분담

◇基本方向◇

- ◇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성장잠재력의 회복 가능

- ◇ 정부가 고통분담을 솔선함으로써 기업·근로자·농민 등 국민 각 계층이 자율적으로 동참토록 호소

1) 정부가 경비절약과 임금안정에 솔선

- 정부가 경상적 경비지출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감축하여 공공부문에서 약1조원 이상 절약(중앙정부 약 5천억원)
 - 전 공무원의 금년 봉급인상분을 반납
 - 공무원의 정원을 전년보다 감축 운영
 - 하위직의 근무여건은 적극 개선
- 구체적인 경비절약 지침 운영
 - 오찬·만찬 등 접대를 검소하게 하여 식사대 절약
 - 고위직 사무실 규모를 직책에 맞게 축소
 - 정부의 행사수를 줄이고 알뜰한 행사 운영
 - 업무용 차량수도 축소
 - 용역비, 보조금의 축소 조정
 - 새로운 출연기관 설립 금지 등

2) 기업·개인서비스업자에게 호소할 사항

- 기업과 개인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1년간 제품 및 서비스가격의 동결을 호소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사내기술훈련을 통하여 재배치하고, 향후 1년간 불법행위의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토록 호소
- 경영성과를 성실히 공개하고 임금안정에 따른 혜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
- 大株主人 기업인들은 假支給金 사용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
- 특히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대기업도 잘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6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납품관련 부조리를 시정
 - 중소기업 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대출보증, 장기구매 계약 등을 통해 협력적 관계 정립

3) 금융기관에게 호소할 사항

- 兩建預金 강요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시정하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진력
- 부동산 위주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신용대출 기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

4) 근로자에게 호소할 사항

-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금년중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토록 호소
- 품질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호소
- 정부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금년중 10만호의 근로자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주택규모와 건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

5) 농민에게 호소할 사항

- 금년 추곡수매가 인상 요구를 자제토록 호소
- 농촌근대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 농촌에도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 주기를 요망

6) 가정주부에게 호소할 사항

-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생활을 영위

4. 「新경제 100일계획」의 효율적 추진

1) 추진상황 점검체제

- (1) 대통령주재 보고회의 개최
 - 보고회의는 50일째에 중간보고를 거쳐 6월 말경 최종보고
 - 회의 운영
 - 경제기획원 장관은 「新경제 100일계획」의 추진상황과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고
 - 각부처 장관은 중소기업 현안대책 등 소관사항을 특별보고
 - 회의에는 全 국무위원과 경제단체장, 근로

자단체장, 금융기관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함께 참석

(2) 경제행정규제 완화계획의 추진

- 국무총리실에서 행정규제 완화의 전반적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 감사원은 규제개선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행정쇄신 차원에서 점검

-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 차관)를 상설기구화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민간업체와 학계 의견은 물론 시민들의 제안(전화: 507-2100, 3100)도 접수하여 금번 개선조치를 계속 보완

2) 100일계획의 기대효과

- 이상과 같은 「新경제 100일계획」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경제운영의 새로운 틀이 형성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다함께 새로 뛰는 「新경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

- 주요 기대효과

(1) 먼저 위에서부터 고통분담을 솔선하고 개혁의지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자신감 고취

(2)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의 불편도 크게 해소

(3) 그동안 주로 수요억제를 통해 안정되어온 물가가 비용측면, 심리적 측면에서도 안정됨으로써 경제 안정기반이 확고히 구축되고 경쟁력 강화와 제도개혁의 기반 조성

(4) 경기활성화는 시차를 두고 하반기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7월부터 본격 추진될 '新경제 5개년 계획'의 기반 조성

'93 한국우수상품전시회 참가 안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엔고로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시장 적응력이 호전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품질한국(Korea for Quality)" 홍보를 통한 한국상품 이미지 개선과 대일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전년도에 2회(도쿄, 큐슈)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는 "한국우수상품전시회"를 금년에도 개최코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업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 기간 : 1993년 8월 31일(화)~9월 3일(금) [4일간]
- 장소 : MIPRO 국제 전시장(동경, 이케부쿠로 소재 문화회관 3층)
- 규모 : 2,500S/M(실전시면적 1,000S/M내외)
- 참가업체 : 80개사 내외(참가신청 마감후

소정의 기준에 의해 선정)

- 출품대상품목 : 대일수출유망상품 전반
- 주 최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 후 원 : 상공부, 日本통상산업성, 일본 무역진흥회(JETRO) 등

2. 참가요령

- 신청기한 : 1993년 5월 30일
- 참가비 : S/M당 81,000원(기본부스 : @ 81,000원×9S/M=729,000원)
* 단, 독립기업관으로 50S/M이상 자체장치 조건으로 참가시에는 참가비 무료
- 구비서류 : KOTRA 소정 참가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카타로그 2부/참가비 입금증 사본 1부

3. 문의처 : KOTRA 전시부 해외전시 2과 (TEL : 551-4422, FAX : 557-5784)